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59호
----------	------

제출연월일 2005. 9. 28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야생동식물 보호법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보호야생동물로부터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보호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이 입힌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 없어 지원책을 마련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농작물피해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장포함 7인 이내
- 나. 피해신고 :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농작물 피해 신고서에 근거서류 첨부 시장에게 신고
- 다. 현장조사 : 해당 읍·면·동장이 리·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여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
- 라.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보상금지급 심의 결정통지
- 마. 지원금의 지급 :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에 의거 지급하되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함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의 : 기획담당관실, 환경보호과

다. 기타

1) 입법예고(2005. 9. 2 ~ 9. 2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멧돼지, 산토끼, 노루·고라니를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주소”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 시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제4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제외대상)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6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천시농작물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지급업무담당국·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야생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1인)

2.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액 산정 관한사항

2. 지원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작물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피해신고 등) ①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그 피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현장조사는 피해지역 리·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이 입회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이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현장조사 후 위원회의 지원금 지급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액 산정) ①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70퍼센트를 산정한다. 단,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농작물로 한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지원금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며 지원금의 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지원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과수 등 영년생 농작물의 피해 지원금은 당해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이의신청) 피해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지원금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작물피해신고서

피해농업인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폰 :)		
피해농경지	지번			
	경작면적(m ²)			
	피해면적(m ²)			
	피해농작물	1.	2.	3.
피해를 입힌 동물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신고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사천시장 귀하 </div>				
근거자료 :				

【별지 제2호서식】

농작물피해 지원금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지원대상자 (주소. 성명)				
보 상 금		금	원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농작물피해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기타)				
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⑥ 피 해 내 역 (작물명, 면적)				
⑦ 피해 금액		원		
⑧피해일자 및 신청사유				
<p>「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기타)				
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⑥ 피 해 내 역 (작물명, 면적)				
⑦ 지원금지급 통지금액		원		
⑧이의 신청사유				
<p>「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 지급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관계 법령 발췌

농어업재해대책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5. "農作物"이라 함은 食用作物·工藝作物·飼料作物·錄肥作物·園藝作物·군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2002.3.3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